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서울 마포구 창전동 6-264 / hrs3388@gmail.com / 02)365-5412

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배움터 봄+1/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수신	울산시의원 강대길, 고희근, 김일현, 김정태, 김종래, 김종무, 문병원, 문석주, 박영철, 박학천, 배영규, 변식룡, 송병길, 송해숙, 윤시철, 이성룡, 임현철, 정치락, 천기욱, 최유경, 한동영, 허령	발신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날짜	2017년 4월 4일	매수	총 2매
제목	"울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기원하며, 그러나 학생의 의견보다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제 4조 2항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울산시를 위해 힘쓰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기원하며, 그러나 학생의 의견보다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제 4조 2항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울산 시의원님들께 전달하기 위해 본 의견서를 발신합니다.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전국의 청소년·학부모·교육·인권단체들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결합한 연대체입니다. 2012년 대선 후보자들에게, 2014년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공약을 모아 발표한 바 있고, 2013년과 2014년 전국학생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국의 인권침해적 학교 교칙 사례를 수합하는 <불량학칙공모전>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학생·청소년 인권 관련 인식 개선

과 제도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3. 그동안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의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이 학생에게 강제되는 문화가 만연했던 상황에서,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당 조례안의 내용 중,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한다"는 조항(제 4조 2항)이 포함된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4.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사회의 입시경쟁으로 인한 장시간 학습에 대해 아동인권의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해온 바 있습니다. 2011년 UN아동권리위원회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학습에 아동들이 광범위하게 등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권고를 한국 정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UN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에서도 "휴식 및 여가에 대한 아동의 권리는 경쟁적인 학업에 의해 좌절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내외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NGO 및 시민사회단체들도 야간자율학습 등의 '장시간 학습 강요'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다수의 관련 전문가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해 쉼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듯이, 장시간의 학습으로 인해 휴식권이 박탈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해당 조례안에서는 조례의 취지를,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규교육과정 및 필요한 방과후 활동 외의 학습에 대하여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사자인 학생의 의사는 물론 학부모의 의사까지 무시하며 진행되었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강요의 문제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을 모두 위해 시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당사자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야간 학습·장시간 학습을 학부모가 강요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인권 보장을 위해, 교사나 학교에 의한 강요이든 혹은 학부모에 의한 강요이든 야간 학습·장시간 학습을 청소년이 강요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6.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강원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등 타 지역의 유사한 조례에서는 학부모가 아닌 학생 당사자가 자율적인 선택권한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조례만이 울산의 조례안과 비슷하게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인천 조례의 해당 부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울산시의회에서 조례안의,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학생 당사자에게 정규교과 외 학습을 강요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해당 부분이 삭제·수정되지 않고 통과될 시, 앞으로 우리를 비롯한 아동·청소년인권 NGO 및 단체들은 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7. "울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그 취지를 살리

려면 학부모의 의사를 우선시한다는 해당 조항, 제 4조 2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 조례안이 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통과되어 울산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휴식권, 자율적인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끝)